

◎

財産及び請求権に関する問題の解決並びに経済協力に関する日本国と
大韓民国との間の協定

(略称) 韓国との請求権・経済協力協定

昭和四十年六月二十二日 東京で署名

昭和四十年十二月十一日 国会承認

昭和四十年十二月十四日 批准の閣議決定

昭和四十年十二月十八日 ソウルで批准書交換

昭和四十年十二月十八日 公布及び効力発生の告示

(昭和四十年条約第二七号)

昭和四十年十二月十八日 効力発生

前文目次

次

ページ

第一条	無償・有償の経済協力、合同委員会の設置及び実施取締の締結	二九三
第二条	財産、権利及び利益並びに請求権に関する問題の解決	二九三
第三条	紛争の解決	二九五
第四条	批准及び効力発生	二九六
末文		二九七

韓国との請求権・経済協力協定

(二)

○第一議定書

昭和四十年六月二十二日 東京で署名
二九九

前文目次

ページ

第一条 年度実施計画の作成及び決定	二九九
第二条 生産物の定義並びに生産物及び役務の供与	二九九
第三条 と通常貿易及び外国為替の負担との関係	二九九
第四条 契約の締結、認証及び商事仲裁並びに契約によらない供与	二九九
第五条 日本国政府の支払	三〇一
第六条 使節団の設置、任務、特権及び免除	三〇一
第七条 実施のための措置及び便宜供与、租税の免除、再輸出の禁止等	三〇四
末文 実施手続及び細目	三〇五

○第二議定書

昭和四十年六月二十二日 東京で
三〇六

ページ

前文	三〇六
第一条 清算勘定残高の返済	三〇六
第二条 賦払金についての韓国の要請と供与限度額の減額	三〇六

第三条	年賦 払の期日	三〇七
第四条	韓国 の要請の期限	三〇七
第五条	韓国 の要請の範囲	三〇七
第六条	賦 払金 の不 払	三〇八
末 文		三〇八

○第一議定書の実施細目に関する交換公文

昭和四十年六月二十二日 東京で 三〇九

目 次

日本側書簡		
I 実施計画の細目		三〇九
II 契約の細目		三一〇
III 支 払 の 細 目		三一一
IV 使節団の職員名の通知及び公示		三一三
韓国側書簡		三一五

○協定第一条1(b)の規定の実施に関する交換公文

昭和四十年六月二十二日 東京で

三一六

日本側書簡

目 次

韓国との請求権・経済協力協定

(四)

1 借款契約及び事業計画合意書	三一六
2 貸付けに関する諸条件	三一六
3 償還期間の延長	三一七
4 海外経済協力基金に対する租税の免除	三一七
5 協議	三一七
韓国側書簡	三一九

○協定第一条2に定める合同委員会に関する交換公文

昭和四十年六月二十二日 東京で

目次	ページ
韓国側書簡	三一〇
合同委員会の設置、構成、会合及び任務	三一〇
日本側書簡	三一一

○合意された議事録

昭和四十年六月二十二日 東京で

目次	ページ
1 日本国内における使用制限	三一三
2 財産及び請求権問題に関する定義	三一三
3 仲裁委員の選定了解	三一五
(a)資本財以外の生産物	三一六

5	(b) 武器、弾薬	三二六
6	外国為替上の追加負担	三二六
7	(b) 契約署名地等	三二七
7	(b) 隨意的役務	三二七
8	韓国からの輸出	三二七
	(b) 事業計画合意の発効日	三二八
	(b) 貸付けの実行日	三二八

○合意された議事録

昭和四十年六月二十二日 東京で 三二九

目次

1	供与限度額の増額	三二九
2	運送及び保険に関する協議	三二九
3	紛争の商事機関への付託	三二九

○商業上の民間信用供与に関する交換公文

目

日本側書簡

ページ

昭和四十年六月二十二日 東京で 三二一

商業上の民間信用供与の容易化及び促進

三二一

韓国側書簡

三二三

財産及び請求権に関する問題の解決
並びに経済協力に関する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協定

韓民国との間の協定

日本国及び大韓民国は、

両国及びその国民の財産並びに両国及びその国民の間の請求権に関する問題を解決することを希望し、両国間の経済協力を増進することを希望して、次のとおり協定した。

第一条

日本国は、大韓民国に対し、

1

(a) 現在において千八十億円（一〇八、〇〇〇、〇〇〇、〇〇〇円）に換算される三億合衆国ドル（三〇〇、〇〇〇ドル）に等しい円の価値を有する

日本国の生産物及び日本人の役務を、この協定の効力発生の日から十年の期間にわたって無償で供与するものとする。各年における生産物及び役務の供与は、現在において百八億円（一〇、八〇〇、〇〇〇、〇〇〇円）に換算される三千万合衆国ドル（三〇〇、〇〇〇、〇〇〇ドル）に等しい円の額を限度とし、各年における供与がこの額に達しな

第二回

이 조약에 대한 민국은,

이 조약에 대한 민국은,

한국과 대한 민국은,

한국 국민의 재산과 한국 및 양국 국민 간의

경쟁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1. 일본국은 대한 민국에 대하여,

(a) 현재에 있어서 1천 800억 일본엔 (108,000,000,000엔)으로 환산되는 3억 아메리카 합중국 달러 (\$300,000,000)과

동등한 일본 엔의 가치를 가지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0년 기간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한다. 매년의 생산물 및 용역의 제공은 현재에 있어서 1백 80억 일본 엔 (10,800,000,000엔)으로 환산되는 3천만 아메리카 합중국 달러 (\$30,000,000,000)과 동등한 일본 엔의 액수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매년의 제공이 본 협정에 미칠

かつたときは、その残額は、次年以降の供与額に加算されるものとする。ただし、各年の供与の限度額は、両締約国政府の合意により増額されることができる。

(b) 現在において七百二十億円（七一、〇〇〇、〇〇〇、〇〇〇円）に換算される一億合衆国ドル（一一〇〇、〇〇〇、〇〇〇ドル）に等しく円の額に達するかの長期低利の貸付けで、大韓民国政府が要請し、かつ、3の規定に基づいて締結される取極に従つて決定される事業の実施に必要な日本国の生産物及び日本人の役務の大韓民国による調達に充てられるものをこの協定の効力発生の日から十年の期間にわたつて行なうものとする。この貸付けは、日本国の大韓民国の海外経済協力基金により行なわれるものとし、日本国政府は、同基金がこの貸付けを毎年において均等に行なうために必要とする資金を確保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必要な措置を執るものとする。

前記の供与及び貸付けは、大韓民国の経済の發展に役立つものでなければならぬ。

両締約国政府は、この条の規定の実施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勧告を行なう権限を有する両政府間の協議機関として、両政府の代表者で構成される合同委員会を設置する。

これまでに、この協定の実施に際しては、大韓民国政府は、この条の規定の実施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勧告を行なう権限を有する両政府間の協議機関として、両政府の代表者で構成される合同委員会を設置する。

これまでに、この協定の実施に際しては、大韓民国政府は、この条の規定の実施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勧告を行なう権限を有する両政府間の協議機関として、両政府の代表者で構成される合同委員会を設置する。

(b) 현재에 있어서 7백 20억 일본 원 (72,000,000,000원) 으로 환산되는 2억 미국 달러 (200,000,000달러) 등등한 일본 원의 액수에 일자기-가지의 장기 저리의 차관으로서, 대화 민국 정부가 요청하고 또다른 3의 규정에 근거에 근거하여 계약을 체결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동력을 대한 민국이 조달하는에 있어 충당될 차관을 본 협정의 틀에 밝혀일보부여 10년 기간에 걸쳐 행한다. 본 차관은 일본국의 해외 경제 협력 기금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하여, 일본국 정부는 동 차관이 본 차관을 미연 구동하게 이행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전기 계급 및 차관은 대한 민국의 경제 발전에 유익한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

2 양 체국 정부는 본 조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권리와 책임 권한을 가지는 양 정부 간의 협의 기관으로서 양 정부의 대표자로 구성된 협동 위원회를 설치한다.

3 両締約国政府は、この条の規定の実施のため、必要な取極を締結するものとする。

第一条

1 両締約国は、両締約国及びその国民(法人を含む)の財産、権利及び利益並びに両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間の請求権に関する問題が、千九百五十一年九月八日にサン・フランシスコ市で署名された日本国との平和条約第四条(a)に規定されたものを含めて、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こととなることを確認する。

2 この条の規定は、次のもの(この協定の署名の日までにそれぞれの締約国が執つた特別の措置の対象となつたものを除く。)に影響を及ぼすものではない。

(a) 一方の締約国の国民で千九百四十七年八月十五日からこの協定の署名の日までの間に他方の締約国に居住したことがあるものの財産、権利及び利益

(b) 一方の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財産、権利及び利益であつて千九百四十五年八月十五日以後における通常の接触において取得され又は他方の締約国の管轄の下にはいつたもの

3 양 쇠약국 정부는 본 조의 규정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작정을 세울한다.

제 2 조

1 양 쇠약국은, 양 쇠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쇠약국 및 그 국민 그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천 9백 51년 9월 3일에 산프란시스코우 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 조약 제 4조 (2)에 규정된 것과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인 것을 확인한다.

2 본 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항장의 서명일까지 가기 쇠약국이 청한 특별 조치의 내용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 쇠약국의 국민으로서 1천 9백 45년 8월 15일부터 본 항장의 서명일 까지 사이에 타방 쇠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 쇠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
으로서 1천 9백 45년 8월 15일 이후에 양국의 통상의 절차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 쇠약국의

관할 하에 들어온 것

紛争の解決

3 2の規定に従うことを条件として、一方の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財産、権利及び利益であつてこの協定の署名の日に他方の締約国の管轄の下にあるものに対する措置並びに一方の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他方の締約国及びその国民に対するすべての請求権であつて同日以前に生じた事由に基づくものに關しては、いかなる主張もす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とする。

第三条

1 この協定の解釈及び実施に関する両締約国間の紛争は、まず、外交上の経路を通じて解決するものとする。

2 1の規定により解決することができなかつた紛争は、いすれか一方の締約国が他方の締約国の政府から紛争の仲裁を要請する公文を受領した日から三十日の期間内に各締約国政府が任命する各一人の仲裁委員と、こうして選定された二人の仲裁委員が当該期間の後の三十日の期間内に合意する第三の仲裁委員又は当該期間内にその二人の仲裁委員が合意する第三の政府が指名する第三の仲裁委員との三人の仲裁委員からなる仲裁委員会に決定のため付託するものとする。ただし、第三の仲裁委員は、両締約国のうちいすれかの国民であつてはならぬ。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 쇼와국은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는 협정의 서명일에 태평 쇼와국의 관할 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 쇼와국 및 그 국민의 태평 쇼와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경구권으로서 동 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조건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第3条

1 본 협정의 예산 및 실시에 관한 양 쇼와국 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 쇼와국의 정부가 태평 쇼와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내에 각 쇼와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 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 위원이 당해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 내에 합의하는 제 3의 중재 위원 또는 당해 기간 내에 이를 2인의 중재 위원이 합의하는 제 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 3의 중재 위원과의 3인의 중재 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 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단, 제 3의 중재 위원은 양 쇼와국 중의 어느 한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批准及び 効力発生	3 こすれか一方の締約国の政府が当該期間内に仲裁委員を任命しなかつたとか、又は第三の仲裁委員若しくは第三国につて当該期間内に合意されなかつたときは、仲裁委員会は、両締約国政府のそれぞれが三十日の期間内に選定する国の政府が指名する各一人の仲裁委員とそれらの政府が協議により決定する第三国の中政府が指名する第三の仲裁委員をもつて構成されるものとする。 4 両締約国政府は、この条の規定に基づく仲裁委員会の決定に服するものとする。
末文	第四条

批准及び 効力発生

この協定は、批准されなければならぬ。批准書は、できる限りすみやかにソウルで交換されるものとする。この協定は、批准書の交換の日に効力を生ずる。

以上の証拠として、下名は、各自の政府からんのために正当な委任を受け、この協定に署名した。

千九百六十五年六月二十二日に東京で、ひとしく正文である日本語及び韓国語により本書二通を作成した。

日本国のために

椎名 悅三郎

高杉 晋一

3 어느 일방 채무국의 정부가 당해 기관 내에 중재 위원을

임명하지 아니 하였을 때, 또는 제 3의 중재 위원 또는 제 3국에 대하여 당해 기관 내에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재 위원회는 양 채무국 정부가 각각 30일의 기간 내에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1인의 중재 위원과 이를 정부가 험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 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 3의 중재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양 채무국 정부는 본 조의 규정에 의거한 중재 위원회의 결정에 복종한다.

제 4 조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그쳤다.

본 협정은 비준서가 그린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이기 대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의 정부인 위임을 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65년 6월 22일 오후 10시에 공동으로 청탁인

일본어 및 한국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大韓民国のために

李 東 元
金 祚

한국을 위하여
椎名悦三郎

高杉 晋一

대한 민국을 위하여
주 东 元
金 祚

第一議定書

財産及び請求権に関する問題の解決並びに経済協力に関する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協定（以下「協定」という。）に署名するに当たり、下名は、各自の政府から正当な委任を受け、協定第一条1(a)の規定の実施に關し、協定の不可分の一部と認められる次の規定を協定した。

第一条

日本国が供与する生産物及び役務を定める年度実施計画（以下「実施計画」という。）は、大韓民国政府により作成され、両締約国政府間の協議により決定されるものとする。

第二条

1 日本国が供与する生産物は、資本財及び両政府が合意するその他の生産物とする。

2 日本国の生産物及び日本人の役務の供与は、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通常の貿易が著しく阻害されないよう、かつ、外國為替上の追加の負担が日本国に課せられぬよう、実施されるものとする。

第三条

1 第五条1の使節団又は大韓民国政府の認可を受けた者は、実施計画に従い生産物及び役務を取得するため、日本国民又はその支配する日本国の法人と直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재산 및 친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 (이하 "협정"이라 함)에 서명함에 있어서 하기 대로는 각자의 경제로부의 정당한 의임을 범위, 협정 제 1조 1 (2)의 규정의 실시에 관하여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인정되는 다음의 규정에 함의 하였다.

제 1 조

1 일본국이 제공하는 생산물 및 용역을 정하는 연도 실시 계획 (이하 "실시 계획"이라 함)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작성되고 양 측 약국 정부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 2 조

1 일본국이 제공하는 생산물은 자본재 및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기타의 생산물로 한다.

2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의 제공은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통상의 부담이 증가되거나 아니 하도록 하며 또한 외국 원에 있어서의 추가 부담이 일본국에 과하여 가지 아니 하도록 실시 된다.

제 3 조

1 제 1조의 사항은 대한민국 정부의 인수를 받은 자는 실시 계획에 따라 생산물 및 용역을 취득하기

に契約
よらな
い

接に契約を締結するものとする。

2 1の契約（その変更を含む。）は、(二)協定第一条

1(a)及びこの議定書の規定、(三)両政府が協定第一条並びに(四)その時に適用される実施計画に合致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らの契約は、前記の基準に合致するものであるかどうかについて認証を得るために、日本国政府に送付されるものとする。この認証は、原則として十四日以内に行なわれるものとする。定められた期間内に認証が得られなかつたときは、その契約は、協定第一条2の合同委員会に付託され、合同委員会の勧告に従つて処理されるものとする。その勧告は、合同委員会がその契約を受領した後三十日以内に行なわれるものとする。この項に定めるところに従つて認証を得た契約は、以下「契約」といふ。

3 すべての契約は、その契約から又はこれに関連して生ずる紛争が一方の契約当事者の要請により、両政府間で行なわれることがある取扱に従つて商事仲裁委員会に解決のため付託される旨の規定を含まなければならぬ。両政府は、正当になされたすべての仲裁判断を最終的なものとし、かつ、執行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ため必要な措置を執るものと

위하여日本国民 또는 그가 지배하는日本の法人과 각각
계약을 체결한다.

2 1의 계약 (그의 변경을 포함함)은, (1) 법정 제 1조

(a) 및 본 의정서의 규정 (2) 양 정부가 법정 제 1조, 1
(b) 및 본 의정서의 실시를 위하여 행하는 양정의 규정 및

(3) 당시에 적용되는 실시 계획에 합치되어야 한다. 이에 한
계약은 전기 기준에 합치되는 개인의 여부에 대하여 인증을

하기 위하여 일본국 정부에 송부된다. 이 인증은 합치적으로
14일 이내에 헤아여 진다. 소정의 기간 내에 인증을 받지
못할 때에는 그 계약은 법정 제 1조, 2의 합동 위원회에

회부되어 합동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처리된다. 동 권고는
합동 위원회가 동 계약을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행한다.
본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받은 계약은, 이하

"계약"이라 한다.

3 모든 계약은, 그 계약으로부터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분쟁은 일본 계약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양 정부
간에 합의한 절 약정에 따라 상사 중재 위원회에 해결을 위하여
회부되는 취지의 구성을 포함하여야 한다. 양 정부는 경당에게
이후에 진 모든 중재 판단을 최종적인 것으로 하고 또한 경쟁될

する。

4 1の規定にかかるらず、生産物及び役務の供与は、契約によることができないと認められる場合は、契約なしで、両政府間の合意により行なうことが可能である。

第四条

1 日本国政府は、第五条1の使節団又は大韓民国政府の認可を受けた者が契約により負う債務並びに前条4の規定による生産物及び役務の供与の費用に充てるための支払を、第七条の規定に基づいて定める手続によつて、行なうものとする。この支払は、日本円で行なうものとする。

2 日本国は、1の規定に基づく支払を行なうにこゝより、その支払を行なつた時に、その支払に係る生産物及び役務を、協定第一条1(a)の規定に従じ、大韓民国に供与したものとみなされる。

第五条

1 大韓民国政府は、同政府の使節団(以下「使節団」とさう。)を日本国内に設置する。

2 使節団は、協定第一条1(a)及びこの議定書の実施を任務とし、その任務には次の事項を含むものとする。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생산물 및 용역의 제공이 계약에 의해 실현될 수 없거나 인정될 경우에는, 양 정부는 그의 합의에 따라 계약 없이 실행할 수 있다.

제 4 조

1 일본국 정부는, 제 5조 1의 사절단 또는 대한민국 정부의 인사를 범은 자가 계약에 의하여 지는 재무와 관료 및 구청에 의한 생산물 및 용역 제공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지불을 제 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할인다. 이 지불은 일본 원으로 한다.

2 일본국은 1의 규정에 의거한 지불을 합으로서 그 지불을 해 한대에, 그 지불이 된 생산물 및 용역을 협정 제 1조 1 (a)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제공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5 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동 정부의 사절단(이하 "사절단"이라 함)을 일본국 내에 설치한다.

2 사절단은 협정 제 1조 1 (a) 및 본 의정서의 실시를 임무로 하며, 그 임무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 (a) 大韓民国政府が作成した実施計画の日本国政府への提出

- (b) 大韓民国政府のための契約の締結及び実施
(c) (b)の契約及び大韓民国政府の認可を受けた者の締結する契約の認証を受けるための日本国政府への送付

3 使節団の任務の効果的な遂行のため必要であり、かつ、もつばらその目的に使用される使節団の日本国における事務所は、東京及び両政府間で合意することがある他の場所に設置する。

4 使節団の事務所の構内及び記録は、不可侵とする。

使節団は、暗号を使用することがである。使節団に属し、かつ、直接その任務の遂行のため使用される不動産は、不動産取得税及び固定資産税を免除される。使節団の任務の遂行から生ずることがある使節団の所得は、日本国における課税を免除される。

使節団が公用のため輸入する財産は、関税その他輸入について又は輸入に関連して課される課徴金を免除される。

5 使節団は、他の外国使節団に通常与えられる行政上の援助で使節団の任務の効果的な遂行のため必要なものを日本国政府から与えられるものとする。

- (3) 대한 민국 정부가 작성한 실시 계획의 일본국
정부에의 제출

- (b) 대한 민국 정부를 위한 기약의 체결 및 실시
(c) (b)의 계약 및 대한 민국 정부의 인가를 받은
자기 체결하는 계약의 인증을 법적 외한 일본국 정부에의 송부

3 사절단의 임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며,
또한, 오로지 그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절단의 일본국에
있어서의 사무소는, 토오토로 및 양 정부 관에서 합의하는 기자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4 사절단 사무소의 구내 및 기록은 불가침으로 한다.

사절단은 암호를 사용할 수 있다. 사절단에 속하며 또한 직접 그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은, 부동산 취득세 및 그 경 차관세가 면제된다. 사절단의 임무의 수행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절단의 소득은, 일본국에 있어서의 과세가 면제
된다. 사절단이 공과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관세 거부
수입에 관하여 또는 수입에 관연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이
면제된다.

5 사절단은, 와 외국 사절단에 통상적으로 부여되는
해당상의 협조로서 사절단의 임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大韓民国の國民である使節団の長、使節団の上級職員二人及び 3 の規定に従つて設置される事務所の所長は、國際法及び國際慣習に基づいて一般的に認められる外交上の特權及び免除を与えられる。使節団の任務の効果的な遂行の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られたときは、前記の上級職員の数は、両政府間の合意により増加することがである。

7 大韓民国の國民であり、かつ、通常日本国内に居住してゐなく使節団のその他の職員は、自己の職務の遂行について受ける報酬に対する日本国における課税を免除され、かつ、日本国の法令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自用の財産に対する関税その他輸入について又は輸入に関連して課される課徴金を免除される。

8 契約から若しくはこれに関連して生ずる紛争が仲裁により解決されなかつたとき、又は当該仲裁判断が履行されなかつたときは、その問題は、最後の解決手段として、契約地の管轄裁判所に提起することがである。この場合において、必要とされる訴訟手続上の目的のためにのみ、使節団の法務部長の職にある者は、2(b)の契約に關し訴え、又は訴えられることがであるものとし、そのために使節団における自己の事務所において訴状その他の訴訟書類の送達

필으로 한 기울 일본국 경부로부에 부여 받는다.

6 대한민국의 국적인 사절단의 장, 사절단의 상급직원 2명 및 3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사무소의 장은 국제법 및 국제 관습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외교관의 특권 및 면제를 받는다. 사절단의 일부의 조과적인 수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기 상급 직원의 수는 양국 정부의 합의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

7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통상 일본국 내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절단의 기타 직원은, 자기의 직무 수행상 받는 보수에 대한 일본국에 있어서의 과세가 면제되어 또한 일본국의 법령에 정하는 바와 따라 자가용 재산에 대하여 면세, 기타 수입에 대하여 또는 수입에 관하여 부과되는 과정금이 면제된다.

8 계약 또는 이와 관련하여 약기되는 분쟁이 중재에 의한 해결을 보지 못한 때, 또는 동 중재 판정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문제는 최후의 해결 수단으로서 계약자와 관할 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소송 절차상의 목적을 위하여서만 사절단의 법무부장의 직에 있는 자는 2(b)의 계약에 관하여 제도이며 또는 응소할

禁再税供及め実
止輸の與びの施
等出免の除
の除置た
の除宜、

を受けることがであるものとする。ただし、訴訟費用の担保を供する義務を免除される。使節団は、4及び6に定めるところにより不可侵及び免除を与えてはくるが、前記の場合において管轄裁判所が行なつた最終の裁判を、使節団を拘束するものとして受諾するものとする。

9 最終の裁判の執行に当たり、使節団に屬し、かつ、その任務の遂行のため使用される土地及び建物並びにその中にある動産は、いかなる場合にも強制執行を受けねることはない。

第六条

1 両政府は、生産物及び役務の供与が円滑かつ効果的に行なわれるため必要な措置を執るものとする。

2 生産物又は役務の供与に関連して大韓民国内において必要とされる日本国民は、その作業の遂行のために大韓民国への入国、同國からの出国及び同國における滞在に必要な便宜を与えられるものとする。

3 日本国の国民及び法人は、生産物又は役務の供与から生ずる所得につき、大韓民国における課税を免除される。

4 日本国により供与される生産物は、大韓民国の領域から再輸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사절단의 자기 사무소에 있어서 소장 기관의 소송 서류의 송달을 접수할 수 있다. 단, 소송 비용의 일부 계급 의무가 면제된다. 사절단은 4 및 6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불가침 및 면제가 보여되나, 전기 경우에 있어서, 관할 재판소가 행한 최종의 재판이 사절단을 구속하는 것으로 수락한다.

9 최종의 재판 집행에 있어서, 사절단에 속하여 또한 그 입국 수임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과 그 안에 있는 동산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강제 집행을 받지 아니한다.

제 6 조

1 양국간의 생산물 및 동일의 계급이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향하여 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생산물을 또는 용역의 계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내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일본 국민은, 그 직업 수임을 위하여 대한민국에의 입국, 동국으로부터의 출국 및 동국에 있어 서의 계약에 필요한 권리가 보여된다.

3 일본국의 국민 및 범인은 생산물을 또는 용역의 계급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과세가 면제된다.

4 일본국이 계급하는 생산물을 대한민국의 협약으로

5 5. いずれの一方の締約国の政府も、日本国により供与される生産物の運送及び保険に關し、公正かつ自由な競争を妨げることがある他方の締約国の国民及び法人に対する差別的措置を、直接又は間接に執らぬるものとする。

6 6. この条の規定は、協定第一条1(b)に定める貸付けによる生産物及び役務の調達についても適用されるものとする。

第七条

この議定書の実施に関する手続その他の細目は、両政府間で協議により合意するものとする。

以上の証拠として、下名は、この議定書に署名した。

千九百六十五年六月二十二日に東京で、ひとしく正文である日本語及び韓国語により本書二通を作成した。日本国のために

椎名 悅三郎

高杉 晋一

大韓民国のために

李 東 元

金 東 祚

부에 제수를 되어서는 아니 된다.

5. 어느 일본 케이국의 정부도, 일본국이 제공하는 상관 물의 수송 및 보험에 관하여, 공정하고도 자유로운 경쟁을 위하여는, 타당 케이국의 국민 및 범인에 대하여 차별적 조치를 취할 또는 간접으로 취하지 아니한다.

6. 본 조의 규정은 협정 제 1조 1 (b)에 정하는 사건에 의한 상해 및 용역의 조항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 7 조

본 의정서의 실시에 관한 절차 기타의 세목은 양 정부 간의 법의에 의하여 합의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로는 본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공동으로 청문인 일본어로 한국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일본국을 위하여

대한 민국을 위하여

椎名 悅三郎

李 東 元

高杉 晋一

金 東 祚

前文

清算
高の返定
清算
勘定

財産及び請求権に関する問題の解決並びに経済協力に関する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協定（以下「協定」と云ふ。）に署名するに当たり、下名は、各自の政府から正当な委任を受け、さらに、協定の不可分の一一部と認められる次の規定を協定した。

第一条

大韓民国は、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清算勘定の残高として一千九百六十一年四月二十一日の交換公文により両締約国政府間で確認される日本国債権である四千五百七十二万九千三百九十八合衆国ドル八セント（四五、七二九、三九八・〇八ドル）を協定の効力発生の日から十年の期間内に、次とのおり分割して返済するもの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利子を附さない。

第一回から第九回までの年賦払の額 各年四百五十七万三千合衆国ドル（四、五七三、〇〇〇ルル）
第十回の年賦払の額 四百五十七万一千三百九十八合衆国ドル八セント（四、五七一、三九八・〇八ドル）

第二条

前条の各年の賦払金について大韓民国の勘定があつ

賦払金に

第二議定書

제 2 회정서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계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그에 부속된 협정 (이하 "협정"이라고 함)에 서명한에 있어서, 하기의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의사를 받고, 대화 협정의 본가문의 일부로 인정되는 다음의 규정에 합의하였다.

제 1 조

대한민국은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청산 계정의 잔액으로서 1961년 4월 22일자 고환 종류에 의하여 양 세국은 정부간에 확인되어 있는 일본국의 채권인 나전 5백 7십 2만 9천 3백 9십 8 아메리카 핫중국 봉 8센트 (\$415,729,398.08)를 협정의 토록 발행일로부터 10년의 기간 내에 마음과 같이 분할하여 번개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무이자로 한다.

제 1회부터 제 9회까지의 연부봉의 액 - 매년 4백 5십

7만 3천 아메리카 핫중국 봉 (\$40,573,000)

제 10회의 연부봉의 액 - 4백 5십 7만 2천 3백 9십 8

아메리카 핫중국 봉 8센트 (\$40,572,398.08)

제 2 조

전 조의 매년의 부봉금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오첨이 있을

つじての要請と供与額の限度額の範囲

たときは、その要請のあつた金額に相応する協定第一條 1(a)の規定による生産物及び役務の供与並びに前条の規定による賦払金の支払が行なわれたものとみなし、これにより、協定第一条 1(a)の規定による生産物及び役務の供与の額並びにその年の供与の限度額は、同條 1(a)の規定にかかるが、その金額だけ減額されるものとする。

年賦払の期日

第一條にさう日本国債権の額の返済に關し、大韓民国は、第一回の年賦払を協定の効力発生の日に行なうものとし、第二回以後の年賦払を毎年七月一日で第一回の支払期日と同一の日までに行なうものとする。

第四条

第一條の大韓民国政府の要請は、日本国財政上の慣行を考慮して、前条の規定による支払期日が属する日本国の会計年度が始まる曆年の前年の十月一日までに、当該支払期日に支払われるべき賦払金について行なわれるものとする。ただし、第一回の支払（及び本文の規定によ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の第二回の支払）についての要請は、協定の効力発生の日に行なわれるものとする。

第五条

韓国の要請の範囲

경우에는 그 오청이 있은 금액에 상당한 범위 제 1조 1(a)의 규정에 의한 상환물 및 응의의 계금과 전 조의 규정에 의한 부불금의 지불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의하여 범위 제 1조 1(a)의 규정에 의한 상환물 및 응의의 계금과 그 외의 계금 한도액은 통 조 1(a)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금액만큼 제외된다.

제 3 조

제 1조에서 언급한 일본국의 채권의 번체에 관하여,
대한민국은 제 1회의 일부불을 협정의 초기 발생일에 험하는
기준으로 하고, 제 2회 이후의 일부불을 매년에 있어서 제 1회의
지불 일자와 동일한 일자까지에 험한다.

제 4 조

제 2조의 의한 대한민국 정부의 오청은 일본국의 재정상의
경우에 고지하여 전 조의 규정에 의한 지불 일자가 속하는 일본국의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연말의 전년의 10월 1일까지에 당해
기준으로 지불 일자에 고지하여 약정 부불금에 대하여 험하여 진다.
단, 제 1회의 지불 (및 본문의 규정에 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 2회의 지불)에 대한 오청은 협정의 초기 발생일에 험하여진다.

제 5 조

대한민국의 오청은 제 1조에서 언급한 매년의 부불금의

不賦
払
金

部又は一部について行なうことができ。

第六条

大韓民国の要請が第四条の規定による期日まで行なわれず、かつ、賦払金の全部又は一部の支払が第三条の規定による支払期日までに行なわれなかつたときは、その賦払金の全部又は一部について第一条の大韓民国の要請があつたものとみなす。

以上の証拠として、下名は、この議定書に署名した。

一千九百六十五年六月二十二日に東京で、ひとしく正文である日本語及び韓国語により本書二通を作成した。

본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해할 수 있다.

제 6 조

대한 민국의 요청이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일자까지에
아예 지지 않고, 대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불이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지불 일자까지에 해하여 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 2조에 따라
대한 민국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로는 본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공동으로 정본인 일본어

한국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日本国のために

椎名 悅三郎

高杉 晋一

大韓民国のために

李 東 元

金 東 祚

일본국을 위하여

대한 민국을 위하여

椎名 悅三郎

高杉 晋一

李 東 元

金 東 祚

(第一議定書の実施細目に関する交換公文)

件名。

1965年 6月 22日
호오코오에서

書簡をもつて啓上いたします。本大臣は、本日署名された財産及び請求権に関する問題の解決並びに経済効力に関する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協定（以下「協定」という。）の第一議定書（以下「議定書」という。）に言及する光榮を有します。日本国政府は、両国政府が議定書第七条の規定に基づいて次のとおり合意することを提案いたします。

I 実施計画

1 議定書第一条の年度実施計画（以下「実施計画」という。）は、両政府がその始期及び終期を合意する年度について決定されるものとする。

2 実施計画の決定は、原則として次のとおり行なわれるものとする。

(a) 第一年度を除く各年度の実施計画は、その適用される年度の開始に先だつて決定される。このため当該年度の実施計画は、その年度の開始の少なくとも六十日前に協議のため日本国政府に提出される。)

(b) 第一年度の実施計画は、協定の効力発生の日から六十日以内に決定される。このため同年度の実施計画は、できる限りすみやかに日本国政府に提

件名。

본관은 금일자 구의의 다음과 같은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표장을 가집니다.

"본 대간은 금일 서명된 일본국과 대한 민국 간의 협정
 및 경구권에 관한 문제의 예금과 주체 입금에 관한 조항 (이하
 "회생부"이라 함)의 제 1 의정서 (이하 "의정서"라 함)에 인급
 하는 영향을 가집니다. 일본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의정서
 제 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회생부에 따른 것을 계약합니다.

I 실시 계획

1 의정서 제 1조의 연도 실시 계획 (이하 "실시 계획"이라
 한다)는 양 정부가 그 시기 및 증거를 위하여 하는 연도에
 대하여 결정된다.

2 실제 계획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행하여 진다.
(a) 계 1년도를 계의한 구 연도의 실시 계획은 그
 적용되는 연도의 개시에 앞서 결정된다. 이를
 위하여 단계 연도의 실시 계획은 그 연도의 개시에
 앞서 적어도 60일 전에 회생부를 위하여 일본국
 정부에 제출된다.

出される。

実施計画は、当該年度中に大韓民国による調達が予定される日本國の生産物及び日本人の役務を掲げるものとする。

4 実施計画は、両政府間の合意により修正することができる。

II 契約

1 議定書第三条1の契約は、日本円で通常の商業上の手続によつて締結されるものとする。

2 議定書第三条2の契約（以下「契約」とさう。）の実施に関する責任は、議定書第五条1の使節団（以下「使節団」とさう。）又は大韓民国政府の認可を受けた者及び議定書第三条1の日本国民又は日本国の法人で、契約の当事者であるものののみが負うものとする。

3 議定書第三条3の適用上、商事仲裁委員会とは、契約のいずれか一方の当事者が仲裁への付託を要請した場合における他方の当事者が居住する国にある商事仲裁機関をさう。

(b) 제 1년도의 실시 계획은, 경쟁 노력 범위에 있어

60일 이내에 결정된다. 이를 위하여 통 연도의

실시 계획은 가능한 한 조속히 일본국 정부에 제출된다.

III 계약

1 의정서 제 3조 1의 계약은 일본 원으로 통상의 산업상의
경쟁에 따라 계약된다.

II 계약

2 의정서 제 3조 2의 계약（이하 “7. 계약”이라 함）의 실시에
관한 계약은 의정서 제 5조 1의 사전단（이하 “사전단”
이라 함） 또는 대한 민국 정부의 인가를 받은 자 및
의정서 제 3조 1의 일본국 국민 또는 일본국의 법인으로서,
국적의 당사자인 자만이 된다.

3 제 3조 3의 적용상, 상사 중재 위원회 약정은, 계약의 어느
일방 당사자가 중재에의 회부를 오경한 경우에 있어서
타당 당사자가 거주하는 국가에 있는 상사 중재 기관을
만난다.